

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의안 번호	3557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26년 3월 6일
제안자 : 교통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- 김혜지 의원 외 19명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의안번호 제3410호), 성흠제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의안번호 제3485호)을 서울시의회 제 334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제3차 회의(2026.3.6.)에서 일괄 심사한 결과,

2건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, 2건의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통합·보완하여 「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」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하기로 함

2. 대안의 제안사유

- 김혜지 의원 외 19명, 성흠제 의원 외 11명이 각각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에 따라 신설된 약물의 범위를 조례에 규정하는

것과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자동차, 자전거, 개인형 이동장치 등 운전자의 안전운행 준수 의무를 시민의 책무로 규정하고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된 교통수단 운영자에 대해 표창·홍보 등 행정적·예산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한편 그 밖의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인바,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합·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함

3. 대안의 주요골자

- 가. 조례에서 인용하는 ‘약물’을 변경된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35호에서의 ‘약물’로 함(안 제5조제2항제2호)
- 나. 자동차, 자전거, 개인형 이동장치 등 운전자의 안전운행 준수 의무를 시민의 책무로 명시함(안 제5조제3항)
- 다.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된 교통수단운영자에 대하여 표창, 홍보, 행정적 지원 및 예산 범위 내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(안 제12조제3항 신설)
- 라. 그 밖에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수정함

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제2호 중 “(마약,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)”를 “(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35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자전거 이용자”를 “자동차등(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) 및 자전거등(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)의 운전자”로 하고, “법령”은 “관계 법령”으로 한다.

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시장은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된 교통수단운영자에 대하여 표창, 홍보, 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5조(시민의 책무) ① (생략)</p> <p>② 시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태에서 자동차등(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) 또는 자전거등(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)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과로, 질병 또는 약물(마약,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)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</p> <p>③ 보행자와 <u>자전거 이용자</u>는 도로를 통행할 때에 <u>법령</u>을 준수하고,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제12조(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) ① · ② (생략)</p>	<p>제5조(시민의 책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(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35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)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③ -----<u>자동차등(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) 및 자전거등(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)의 운전자</u>----- -----<u>관계 법령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제12조(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</p>

<신 설>

③ 시장은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된 교통수단운영자에 대하여 표창, 홍보, 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